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

2019. 3. 28.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목 차

- 1 공청회 개최배경
- 2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 3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 4 향후 계획(안)

1

공청회 개최배경

1. 공청회 개최배경

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바이오에너지 범위의 명확화

- 바이오중유 상용화 결정('18.9월)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범위의 명확화
- 일부 정의가 불분명한 연료명에 대한 명확한 범위 정립 필요

▣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종료('19.3.14)에 따른 본격적인 바이오중유 발전 사업 개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바이오중유 정의 반영('19.1.1 시행)

< 바이오중유 시범사업 추진경과 >

- ① (근거)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14.1.1 제정)
- ② (목적)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이용보급 확대 필요성, 품질, 성능 및 안정성 등 검증
- ③ (기간) '14.1.1~'19.3.14
- ④ (참여사업자)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5개社

▣ 국내 법령에 정의가 부재한 연료, 실제 발전 사례가 없는 연료 제외 검토

1. 공청회 개최배경

② 신재생에너지 범위에서 비재생 폐기물 제외 (신재생법 개정)

-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위에서 제외토록 신재생에너지법 개정('19.1.15)

* 김기선 의원, 손금주 의원 등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17년)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① (내용) 신재생에너지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 제외
- ② (시행일) 2019년 10월 1일
- ③ (공급인증서 발급 특례) ①기존 사업자 및 ② 법 시행 전 공사에 착수한 사업자가 생산한 비재생 폐기물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예외 인정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 시행령(폐기물에너지 개념 재정립) 및 시행규칙(REC* 발급 세부특례 마련)

* REC(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에 발급하는 인증서

1. 공청회 개최배경

③ 수열에너지 범위 및 기준 확대

- 수열 범위 및 기준 확대 요구에 따라 공청회를 통해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방향 검토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18.12월, 최인호 의원)

< 참고 : 최인호 의원 개정안 발의 주요 내용 >

- 수열에너지를 해양표층수로 한정함에 따라 하천수의 수열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포함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수열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해수 뿐만 아니라 하천수를 포함토록 범위를 확장하려고 함

2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2.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1] 바이오·폐기물·수열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개정

● 바이오 개정(안) : 바이오에너지 범위의 명확화

	현행	개정안	비고
범 위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물·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후단 신설>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땀감,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u>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u>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물·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u>바이오중유</u>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땀감,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 폐기물 개정(안) : 재생에너지 범위에서 비재생폐기물 제외 및 정의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기 준	1)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1)부터 3)까지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본다.	1) <u>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u> 2)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1)부터 3)까지의 폐기물에너지 중 비재생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함. 이 경우, 비재생폐기물은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에서 기원한 화학섬유, 인조가죽, 비닐 등 생물기원(biogenic)이 아닌 폐기물을 말한다.	생물기원으로부터 발생한 에너지에 한정하도록 기준을 변경하고, 비재생폐기물의 정의 신설

2.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1] 바이오·폐기물·수열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개정

● 수열에너지 개정(안) : 수열에너지의 기준 개정 및 범위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기준	물의 표층의 열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구체적 기준, 범위는 정책연구과제 통해 상세 검토예정('19.4월초 착수)
범위	해수(海水)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해수, 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단, 해양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3.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비재생폐기물 공급인증서(REC) 발급 기한 설정

- 개정법 부칙의 공급인증서 발급 특례에 따라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
 - “신재생에너지에 한정하여 REC를 발급”하는 REC발급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 및 예비사업자의 법률 신뢰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급인증서(REC) 발급

▣ 특례 적용 대상

- 개정된 법률 시행일(2019.10.1일)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존사업자 및 법 시행 전 공사계획인가 또는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자로서 공사에 착수한 자
 - “공사에 착수한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또는 착공연기 확인서에 명시된 착공예정일자를 준용할 예정

▣ 특례 적용 기한

- (부생가스) '20년 말까지만 공급인증서(REC) 발급
- 일부 사업자에게만 한정 발급되고 있어, REC발급 중단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
- (그외 폐기물) 공급인증서(REC) 최초 발급일부터 16년간* 발급

* 법인세법 상 전기공급업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16년) 및 신재생법 개정 취지(기존 사업자 신뢰보호) 고려



4

향후 계획(안)

4. 향후 계획(안)

공청회 이후 후속조치 일정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관련 향후 추진일정(안)

- (4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 * 단, 수열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은 국회 논의과정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4월~5월) 입법예고(40일)를 통한 사업자 의견 추가 수렴
- (9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 확정 및 공포

▣ 폐기물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한 향후 추진일정(안)

- (4월~5월) 비재생폐기물 구분을 위한 시험방법, 주기 등 검토, 협의(환경부)
- (6월~7월) 사업자 의견 수렴
- (9월말) RPS 규정 개정

▣ 추가 의견 개진

- masacho@thegrimm.kr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